

1.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
 2. 삭제 <2019. 6. 28.>
 3.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
- 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38조의3(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)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"중개 · 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은 중개 · 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. <신설 2024. 7. 10.>

②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9. 19., 2015. 10. 1., 2017. 1. 6., 2019. 6. 28., 2024. 7. 10.>

1.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
2.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할 것
3.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
4.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할 것
5.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. 다만,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가.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
 - 나.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
 - 다.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, 출발지 및 도착지
 - 라. 화물의 종류, 수량
 - 마.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, 작업인원, 포장 및 정리 여부, 장비사용 내역
 - 바. 운임 및 그 세부내역(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)
6.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(화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)

[본조신설 2011. 12. 31.]

제39조

[제21조의4로 이동 <2016. 6. 30.>]

제39조의2(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) ①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,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. <개정 2022. 9. 30.>

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제39조의3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영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. <개정 2022. 9. 30.>

[본조신설 2011. 12. 31.]

제40조(사업의 휴업 · 폐업 신고)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